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28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최수진・임이자・박준태

김민전 · 강선영 · 김예지

성일종 • 구자근 • 조배숙

이달희 · 조정훈 의원

(119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으로부터 증언·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청문회의 개회 요건, 절차 및 공개 여부만을 규정할 뿐,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으로부터 증언·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. 그 결과 지나친 증언·진술 요구로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원칙적으로 청문회를 개회일 밤 12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증인·감정인·참고인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5조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일 밤 12시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. 다만,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동의를 받거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청문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문회를 개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 정 안
제65조(청문회)	1 ~	4	(생	제65조(청문회) ① ~ ④ (현행과
략)				같음)
<u> <신 설></u>				⑤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일 밤
				12시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
				다. 다만, 증인·감정인·참고
				인의 동의를 받거나 위원장이
				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
				<u>러하지 아니하다.</u>
⑤ ~ ⑧ (생	략)			<u>⑥</u> ~ <u>⑨</u> (현행 제5항부터 제8
				항까지와 같음)